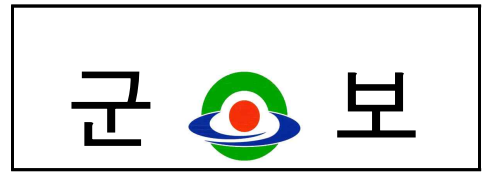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440호 2023. 4. 17.(월)

선 람	기 관 의 장

규 칙

- 예천군보 규칙 일부개정규칙(예천군 규칙 제1318호)

예 규

- 예천군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예천군 예규 제25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담당관(전화 650-6065)

예천군보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4월 17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규칙 제1318호

예천군보 규칙 일부개정규칙

예천군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편찬”을 “편집”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관하여는”을 “관하여”로 한다.

제2조 중 “편찬”을 “편집”으로 하고, “기획예산실”을 “군보업무 담당부서”로 한다.

제4조제7호,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기타란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 제9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9조, 제11조 및 제13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기타란) 기타란에는 기타 군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게재한다.

제9조(중전의 제8조) 중 “당해 실과소장”을 “해당 업무소관 부서장”으로, “기획예산실장”을 “군보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11조(중전의 제9조) 중 “기획예산실장”을 “군보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발행형식 및 배부) ① 군보는 전자군보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종이군보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군보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예천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 부서 및 읍·면에 배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종이군보를 발행할 경우 전 부서, 읍·면에 배부하여 군보를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비치하고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불필요한 군보 편찬 내역을 정비하고, 부서 명칭 통일 및 군보 발행형식과 배부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부서 명칭 통일(안 제2조, 제9조, 제11조)

- 주관 부서는 “군보업무 담당부서”로, 주관부서장은 “군보업무 담당부서장”으로 명칭 통일

나. 군보 편찬 구분 현실화(안 제4조)

- 사장된 편찬 내역을 정비하여 현실화

다. 군보 발행형식 및 배부 관련 규정 신설(안 제12조)

- 전자군보 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종이군보 발행시 군보를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비치하도록 규정

예천군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3년 4월 17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예규 제25호

예천군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예천군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하여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행동,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절차의 투명성과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 처리 담당자”란 「예천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민원응대 공무원 등”을 말한다.
2. “휴대용 보호장비”란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와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를 말하며 각각의 용어의 뜻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의 영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체나 근무복 등에 부착 혹은
착용하여 직무수행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음성포함)(이하“영상”이라
한다)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나.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 등 위
법행위의 음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체나 근무복 등에 부착 혹은 착용
등을 통해 직무수행과정을 근거리에서 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3. “영상기록”이란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를 사용하여 녹화된 영상(음성포함)
기록물을 말하며, “음성기록”이란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를 사용하여 녹음
된 음성기록물을 말한다.

4.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란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저장·관리할 수
있는 장치로서 휴대용 보호장비에 부착·결합된 저장장치를 말한다.

5.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이란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저장·관리할 수
있는 장치로서 예천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지정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6. ”관리책임자“란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을 실제 운용하는 부서에서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을 운영 및 관리 전반을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제3조(권익보호) ① 민원 처리 담당자는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되,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민원 처리 담당자는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장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등

제4조(휴대용 보호장비의 사용 기준) 민원 처리 담당자가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가 진정 또는 자제 요청을 하였음에도 지속하여 폭언(욕설, 협박, 성희롱 등)을 하는 경우
2.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협하거나 폭행, 기물파손 등의 징후 등(이하“위법행위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위법행위 등을 하고 있거나, 위법행위 등의 발생이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을 경우

제5조(사용자 준수사항 등) ①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녹화 또는 녹음 시작과 종료 전에 녹화 또는 녹음 시작 및 종료 사실을 고지. 다만, 녹화 또는 녹음 사실을 사전에 고지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현장 상황이 긴급한 경우 등에는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등록할 때 고지 못한 사유를 기록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녹화 또는 녹음을 마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책임자를 통해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을 이용하여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에 전송·저장
3.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 또는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가 아닌 곳에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저장·전송 금지

4. 관리책임자는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 전송 시 관리번호, 녹화제목(녹음제목), 녹화일(녹음일), 녹화내용(녹음내용) 등을 입력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 사용을 마친 휴대용 보호장비는 즉시 제7조에 따른 입·출고 담당공무원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영상·음성의 녹화·녹음, 휴대용 보호장비의 자료 저장 상태 확인
2. 휴대용 보호장비 장애의 경우 자체진단·고장신고 및 장애기록 유지
3. 휴대용 보호장비에서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로 실시간 전송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 전송 확인
4. 휴대용 보호장비 및 관련 기기 운영·관리

제6조(휴대용 보호장비의 운용 기준) 휴대용 보호장비의 운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에서 지정하는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 연결된 때에만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전송하는 체계를 갖출 것. 다만, 휴대용 보호장비를 피탈당하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무선 방식으로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체계를 갖출 수 있다.
2.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에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전송한 때에는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에 저장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삭제할 것

3. 군에서 보급한 장비만 사용하는 등 상호 운용성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제7조(관리책임자 및 입·출고 담당자 지정) ①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책임자(정) : 사용부서 부서장
2.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책임자(부) : 사용부서 주무 팀장

②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의 입·출고를 관리할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담당공무원은 휴대용 보호 장비 운영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으로 입출고를 관리하여 분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3장 기기관리 및 보안 등

제8조(휴대용 보호장비 관리) ① 휴대용 보호장비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부서에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휴대용 보호장비는 사용부서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휴대용 보호장비의 분실, 피탈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제7조에 따른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휴대용 보호장비 보안관리) 휴대용 보호장비에 대한 보안대책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는 관리책임자만 접속
2. 무선으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 전송 시 암호화하여 전송

제10조(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소의 지정 및 운영) ①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 책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에 담긴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②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고소, 고발 등 (이하 ‘법적조치 등’이라 한다)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5일간 보관할 수 있으며, 법적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그 기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고소, 고발 등을 위해 영

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기로 결정하여 보관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에 한한다.

③ 휴대용 보호장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자의적으로 편집이나 삭제가 불가능하도록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을 설계하고, 군 내에서 관리하는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저장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 또는 개인음성정보가 유출되거나 오용·남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민원인의 열람 등 요구) 민원인의 영상 및 음성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를 준용한다.

제4장 기록물 관리 및 교육

제12조(영상·음성기록 증거물 작성) ① 민원 처리 담당자는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증거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을 이용하여 영상파일 또는 음성파일을 CD, DVD 등의 형태로 제작하고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 증거물 표면에 일시, 장소, 민원 처리 담당자 성명, 민원인 성명 등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민원 처리 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작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 증거물은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자 교육) ① 관리책임자는 최초 민원 처리 담당자가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1시간 이상 교육을 하고, 교육내용에는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법, 사용지침,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7조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가 제1항의 교육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내용에 대하여는 예천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영상·음성 기록 증거물 관리 현황 [제5조제1항제4호 관련]

[illegible]

[별지 제2호서식]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 장비 입·출고 현황 대장 [제7조제2항 관련]

[illegible]

[별지 제3호서식]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 장비 등록대장 [제8조제1항 관련]

[illegible]

◇제정이유

-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기준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사용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나. 관리 책임자 지정 및 조치사항 (안 제7조)
- 다.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라. 영상·음성기록 증거물 작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